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4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 1. 제안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비밀누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5. ~ 2.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

는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